



## 4.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

<p>의의</p>	<p>①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p> <p>②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강제력에 대한 법률의 근거규정이 없는한 직접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고, 관련 법령에 벌칙(대부분 과태료인 질서벌임)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뿐이다.</p> <p>③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 4)</p>
<p>적용범위 (§ 3)</p>	<p>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따라서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일반법이다)</p> <p>②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세·형사등 관련분야에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적용범위의 예외를 두고 있고, 구체적인 조사절차와 위반시 제재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p>
<p>기본원칙 (§ 4)</p>	<p>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p> <p>㉠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p> <p>㉡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근거 (§ 5)</p>	<p>①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b>비교</b>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X). → 일반적으로 행정조사의 실시여부는 재량규정이 대부분이고, 음주측정도 재량규정이다(도로교통법 § 44②). 그러나 교통사고조사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조사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도로교통법 § 54⑥, 동법 시행령 § 32조).</p> <p>② ①의 법령에 근거한 출입 및 조사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출입하여 조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p>
<p>출입·검사 등 (§ 44)</p>	<p>허가관청(경찰청장·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공의 제조소·판매소 또는 임대소, 화약류저장소, 화약류의 사용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벌칙 (§ 72)</p>	<p>제44조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08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 ② 「행정조사기본법」은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와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출입과 검사는 경찰관이 수사기관으로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
- ④ 경찰공무원이 「도로교통법」규정에 따라 호흡측정 또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고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09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언제나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③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③의 법령에 근거한 출입 및 조사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로 출입하여 조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10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의 위험방지를 위한 긴급출입은 행정조사가 아니라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행정조사절차에는 수사절차에서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④ 「도로교통법과 동법 시행령」상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답 : 4, 2, 4